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Ce클래스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6. S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4. (생략)</p> <p><u>5. Ce클래스</u></p> <p><u>6. S클래스</u>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별</u></p>

<p>1. ~ 2. (생략)</p>	<p><u>시행령 제 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C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 <p><u>6. S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
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C·Ci·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</p>	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C·Ci·W·<u>Ce</u>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</p>

